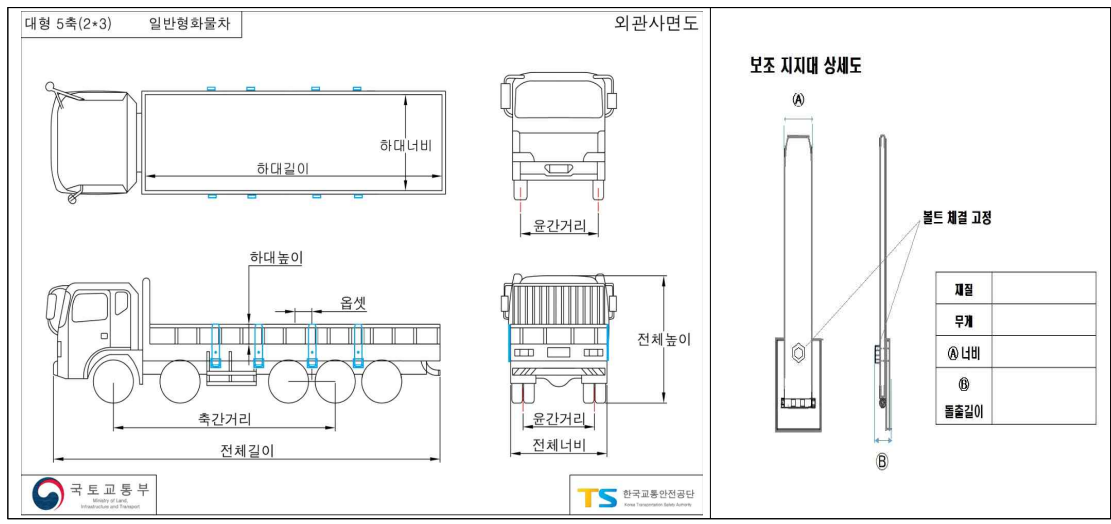



제목	적재함 보조 지지대(고정장치) 설치	코드	657
장치	○ 물품적재장치		
신청 사유	○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적재함)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근거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승인  
조건

- 적재함 내부 제원 변경 없이 보조 지지대 높이는 하대높이 이내일 것
  - 물품적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하고, 운행 중 탈락의 우려가 없도록 추가로 1개소 이상 고정(볼트 등) 될 경우에만 승인가능
    - 리벳, 나사못(피스), 로프, 체인, 낫은 구조 등 탈·부착식은 불가
  - 측면 좌·우 각각 10개소, 후면 2개소 이하로 설치 할 것
    - 지지대의 가로방향 너비는 200mm 이내
  - 설치되는 지지대(고정장치)의 중량의 합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중량 허용범위 이내일 것(단, 중량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장치로 튜닝 승인 가능)
  - 물품적재장치의 적재함 지지를 위한 고정장치로 너비방향에서 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125mm 이하로 설치하고 제원측정대상에서 제외
  - 지지대의 설치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외관도에 표기하고 장치 상세도\* 첨부
    - \* 장치 상세도 - 예시 : 장치 치수, 중량, 고정방식 등
  - 하대높이가 있는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가능
- ※ 변형, 평판형,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탱크로리, 암롤, 살수차 등)는 제외



제목	적재함 보조 지지대(고정장치) 설치	코드	657
승인 불가 사례	<b>튜닝 승인 불가 사례</b>		
			
튜닝승인 업무처리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재함 보조 지지대의 설치상태 등을 확인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는 튜닝승인 불가</li> <li>○ 튜닝 후 외관도, 지지대 상세도 등을 확인하여 제원의 중량허용차 범위 이내 장치변경으로 승인처리</li> <li>○ 중량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구조·장치로 튜닝 승인 가능</li> </ul>		
튜닝검사 업무처리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재함 보조 지지대가 물품적재장치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li> <li>○ 적재함 보조 지지대가 상세도와 동일한 장치 구조인지 확인</li> <li>○ 외부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날카롭지 않은 구조일 것</li> <li>○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탈·부착식으로 꽃을 수 있는 구조의 꽃이집만 설치하는 경우 설치 불가</li> </ul>		
승인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재함 보조 지지대(고정장치) 설치(좌측:00개, 우측00개, 후면00개)</li> </ul>		

튜닝 승인 제외 대상	
	<p>부착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이어나 로프 등을 사용하여 물품적재장치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장치</li> </ul>
	<p>슈퍼링크(파워링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재함 문의 열고 닫을 때 개폐를 작은 힘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설치되는 개폐 관련 장치</li> </ul>
	<p>경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닫이문을 달 때 한쪽은 차체, 한쪽은 문에 고정하는 철물</li> <li>-스톱바</li> <li>- 적재함 문을 고정하는 고정장치</li> </ul>
	<p>접이식발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차 측면에 사용자의 발로 밟고 올라가기 위해 설치하는 발판</li> </ul>

튜닝승인 가능 사례



일반형 화물자동차 구조

물품적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 (용접)하여 낙하사고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볼트로 추가 고정한 경우



박스형 화물자동차(윙바디 등) 구조

물품적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 (용접)하여 낙하사고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볼트로 추가 고정한 경우



일체형(일명:방통) 화물자동차 구조

물품적재장치(차체)에 1개소 이상 견고히 고정 (용접)하여 낙하사고의 위험이 없는 구조로 볼트로 추가 고정한 경우

※적색부분과 같이 탈·부착식은 설치불가

튜닝승인이 불가한 사례

